[#붙임 1]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5BL '엘리프 시흥 더프라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5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4개동 총 338세대 中 공급대상 30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구 분		타입	84A	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2 (10)	1 (5)	3 (15)
		서울특별시	2 10)	-	2 (10)
		인천광역시	1 (5)	-	1 (5)
	국가유공자		5 (25)	1 (5)	6 (30)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5)	-	5 (2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 (25)	1 (5)	6 (30)
	중소기업 근로자		5 (25)	1 (5)	6 (30)
합 계			25 (125)	4 (20)	29 (145)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된 내용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본 주택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6.10.26.(월)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6.11.06.(금)	견본주택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6.11.09.(월)	인터넷 청약접수(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https://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2026.11.17.(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6.11.28.(토)~11.30(월)	견본주택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68-7

※ 상기 분양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全 은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아래 별도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따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시흥시 및 경기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3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의 모집일정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10.26.(월)**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